

: 한돈협지 313-2호

# 양돈분뇨 정화방류 처리에 따른 양분저감 효과 조사 용역 입찰 공고 <긴급>

## 1. 입찰에 부치는 사항

- 가. 입찰건명 : 양돈분뇨 정화방류 처리에 따른 양분저감 효과 파악 연구 용역  
(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)
- 나. 용역 계약 기간 : 22년 7월 ~ 12월 말 (총 5개월)
- 다. 용역 계약 금액 : 50,000천원  
※ 세부 규정의 경우 한돈자조금 규정에 준용
- 라. 용역 범위 :
  - 정화방류 수질오염 총량 저감시설 인정 방안 마련
  - 한돈농가 정화처리 전환에 따른 탄소저감 효과 파악

## 2. 참가자격

-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유자격자
- 위와 관련된 유사 연구를 추진한 실적이 있는 대학 및 기관, 단체, 연구소

## 3. 입찰일정

- 입찰공고 기간 : 2022년 6월 27일 ~ 7월 7일 (한돈협회 및 나라장터 공고)
  - ※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(약칭:국가계약법시행령) 제35조(입찰공고의시기)5항, 제43조(협상에의한계약체결) 1항 준용
- 입찰등록 및 제안서 마감 : 2022. 7. 7(목), 17시 까지
  - 접수처 :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길9 제2축산회관 3층 (사)대한한돈협회  
(E - mail 접수처 : rlagkwp@naver.net)
  - 접수방법 :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및 이메일 접수
- 심사위원회(공개발표평가) 계획 : 2022. 7. 11(월), 14:00
  - 장소 :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6길 9 제2축산회관 3층 (사)대한한돈협회

- 협상 및 계약체결 : 2022. 7. 13(수)
- 유찰 : 유찰시 10일간 재공고하며, 2회 유찰시 적격심사로 협상 대상 선정
- 재공고 : 7/8 재공고 → 7/18 등록마감 → 7/19 심사위원회(제안서 심사 또는 재유찰시 적격심사) → 7/22 협상 및 계약체결

※ 세부 일정 및 장소, 방법 등은 상황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.

#### 4. 제출서류

- 사업 제안서 1부
-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
-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
- 사업비 집행 계획 1부.
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위임장(해당자에 한함) 1부
- 관련 사업 실적 증빙서

#### 5. 낙찰자 선정 : 경쟁입찰(협상에 의한 계약체결)

-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35조 5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
- 평가 기준 및 배점은 심사기준표(별첨)를 참고하고, 제안요청서 및 과업 지시서를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시
-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발표평가 한 후 종합평가를 토대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, 개별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 선정
- 심사위원회는 대한한돈협회의 내부 및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할 예정이며 위원명단은 비공개
- 협상은 제안서 기술 능력평가(80%) + 가격평가(20%)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  
(단, 기술능력평가 결과 배점한도의 85%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)
-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,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

※ (세부평가항목 배점 우선순위) 기술능력평가/정성적 평가분야의 ①(15)-②(15)-③(15)-④(15)순

-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

## 6. 연구용역비 한도

- 연구용역비 한도는 50,000천원(제세공과금 포함)으로 하되, 제안자가 제안하는 내용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하여 제시할 수 있으며, 제안내용과 사업비등을 복합적으로 심사하여 계약 우선순위업체 선정
- 연구용역의 특성상 연구용역의 간접비는 총 사업비의 5%를 초과할 수 없음.

## 7. 입찰무효

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

## 8. 기타사항

- 계획서 및 제안서 양식(첨부자료 참고하여 계획서 및 제안서 작성·제출)
-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한돈자조금 사업승인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최종 선발한 용역제안서는 계약 체결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본회와 협의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문의처 : (사)대한한돈협회 농가지원부 김하제 대리(T. 02-581-9754)

위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6월 27일

사 단 법 인 대 한 한 돈 협 회 장



<별첨>

# 양돈분뇨 정화방류 처리에 따른 양분저감 효과 조사 용역 선정 심사 기준표

□ 심사기준표

구 분	평가 항목	배 점	채 점		
기술 능력 평가	정량적 평가분야 (20)	① 사업 수행경험(실적) -본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충족 하는가?	10		
		② 사업 수행 인력 전문성 (자격증, 경력) -인력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?	10		
	정성적 평가분야 (60)	① 용역사업의 이해도 -제안의 내용 및 사업목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가?	15		
		② 사업계획의 구체성 -목적, 사업내용, 추진절차 등이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?	15		
		③ 사업계획의 타당성 -목적 및 사업내용을 이해하기 타당하고 적합한 사업 추진방법, 절차, 일정이 타당한가?	15		
		④ 사업계획의 체계성 -목적 및 사업내용을 달성하기 위해 전반적 추진계획이 체계적인가?	15		
	가격 평가	입찰가격 평가 (20)	① 사업 예산의 적정 배분 -사업 소요 예산이 적절히 배분되었는가?	20	
		<b>총점</b>	<b>100</b>		

※ 기술능력평가 결과 배점한도의 85%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.

	성 명	서 명
심사 위원		

# 양돈분뇨 정화방류 처리에 따른 양분저감 효과 조사 용역 과업지시서

---

## 1. 사업목적

- 가축분뇨의 농경지 면적 감소등으로 가축분뇨 자원화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한돈 농가에서는 최근 빠른폭으로 정화방류 농가가 확대되고 있음
- 그러나 가축분뇨 정화방류 처리에 따른 양분 및 탄소저감에 대한 기초 데이터가 부족하여 일선 지자체에서는 정화방류 처리 전환에 부정적임.

## 2. 추진 방안(안)

- 1) 정화방류 수질오염 총량 저감시설 인정 방안 마련
  - 정화처리 방법 및 공정별 양분 저감량 파악
- 2) 한돈농가 정화처리 전환에 따른 탄소저감 효과 파악
  - 탄소저감 효과파악 및 탄소배출권 거래제 가능 여부 검토 등

## 3. 향후 이용 방안

- 한돈농가 정화방류 처리에 따른 양분저감 효과 및 탄소저감 효과 파악
- 한돈농가 정화방류 처리 확대 방안 마련